성주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배재만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행정안전부 제17893호, 2022.1.13. 시행)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인용 조문 변경 개정(안 제1조~ 안 제2조)

- 목적: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제51조로 변경
- 범위: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변경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조례의 목적과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제51조로,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